

## 연구논문

# 1920년대 전반 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

---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독립연구자, 한국근대사 전공

hirobayashi@hanmail.net

---

## I. 머리말

II.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 방식의 추이

III. 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의 설치·운영·폐지

IV. 사설학술강습회의 설립

V. 맷음말

---

## I. 머리말

---

잘 알려져 있듯이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공립 보통학교 3면 1교 정책이 실시되어 입학 정원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정원수의 증가 이상으로 입학 지원자 수가 급증하여 소위 보통학교 ‘취학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 각지에서 속수학교(速修學校)와 사설학술강습회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의 주제 중 하나는 1920년대 전반 공립 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의 설치·운영·폐지의 실태를 검토하여 그 일단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가 속수학교에 주목한 이유는 그 임시적 성격에 있다. 즉, 속수학교가 1920년대 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설치되고 폐지되었다는 사실로, 이 교육기관이 이 시기 특유의 정책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그 과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가설이 타당하다면 그동안 학계에서 간과되어 온 속수학교를 고찰함으로써 이 시기 식민 조선의 교육 상황과 교육정책에 대하여 종래와 다른 각도에서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속수학교가 대응한 과제란 무엇이었을까? 당시 상황으로 보통학교 ‘취학난’을 해결하기 위해 속수학교가 설치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취학난’에 대한 대응이라면 보통학교를 증설하면 되므로 속수학교라는 특별한 교육기관을 창설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 연구는 ‘취학난’과 관련하여 1920년대 초에 시작된 보통학교 입학 연령 제한 정책 때문에 조선 사회에 혼란이 생겼다는 사실에 주목하여<sup>1</sup> 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속수학교가 설치되었다는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겠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주제는 속수학교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보통학교

---

1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 정책과 입학지원자의 급증·급감」, 『역사문제연구』 55(2024).

입학연령 초과 아동(이하 ‘연령 초과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조선인 사회가 스스로 사설학술강습회를 설립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사설학술강습회란 사립학교와 서당을 제외한 모든 민간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교육기관 범주이다. 즉, 「私設學術講習會에 關하는 件」이라는 간소한 법령에 따라 통제되는 것만을 공통점으로 한 잡다한 교육기관의 집합이다.<sup>2</sup> 따라서 사설학술강습 회의 실태는 아주 다양했다. 예를 들어, 운영 시간에 따라 주간제와 야간제가 있었다. 명칭은 ‘학원’·‘강습소’·‘야학’ 등 여러 가지였다. 설립 목적별로 정리하면 자동차 운전·미싱 재봉·어학 회화 등 특수 기예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현재의 입시학원에 가까운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 어떠한 이유로 보통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령 아동에게 보통학교에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sup>3</sup> 연령 초과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기관, 고등보통학교 설립에 실패한 지역 등에서 보통학교 졸업 이상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소위 ‘문맹퇴치’와 ‘상식보급’을 위한 교육기관 등이 있었다. 단 선행연구는 소위 ‘야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sup>4</sup> 그 이외의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 연령 초과 아동 구제를 위한 사설학술강습회를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교육 상황을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고, 사설학술강습회 연구의 공백 일부 또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단 검토 시기를 속수학교와 동일한 1920년대 전반에 한정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의

2 渡部學, 「私設學術講習會」の「露頭」, 『韓』3-10(1974); 渡部學, 『朝鮮教育史』(講談社, 1975); 盧榮澤, 「日帝下 私設學術講習會에 대한 統制策」, 『史學志』10(1976); 노영택, 「日帝下 民衆教育運動史』(서울: 탐구당, 1979); 정혜정, 「일제하 ‘학술강습소’의 문화운동과 샘골학원」, 『역사와교육』29(2019). 정혜정은 ‘사설교육기관은 인가제가 적용된 학술강습소와 적용되지 않은 야학이나 일반강습소로 구분된다’라고 인식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3 古川宣子, 「1920年代 大邱 德山學校」, 『朝鮮史研究會論文集』45(2007).

4 ‘야학’에 관한 연구는 김형목, 『배움의 목마름을 풀어준, 야학운동(서울: 서해문집, 2018) 말미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상황만 검토하고 그 후의 전개는 검토하지 않겠다.

또 이러한 검토를 진행하기 전에 속수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가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의 결과 발생한 혼란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을 설명해 두겠다. 먼저 보통학교 졸업자 중 상당수가 중등학교에 진학할 것을 희망한 사실을 확인하겠다. 그 후 제2차 조선교육령 아래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 제도에서 변화한 점과 변화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겠다. 이 작업을 통해 속수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II.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 방식의 추이

### 1. 보통학교 졸업자와 비졸업자의 일괄 시험 선발

먼저 1920년대 전반 보통학교 졸업자의 진로 또는 희망 진로에 관하여 신문기사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사례마다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상당수의 학생이 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중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한 것은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923년도 밀양보통학교(密陽普通學校) 졸업자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진학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보호자가 “上級校의 入學率이 低劣됨은 學校의 羞恥”라고 하여 “학교 책임자를 무수히 비난”하는 풍조로 이어졌다.<sup>5</sup>

다음으로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 과정을 검토하겠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

---

5 《동아일보》, 1926년 6월 3일; 《조선일보》, 1927년 3월 17일.

표1-1920년대 전반 공립보통학교 졸업자의 진로 또는 희망 진로 사례

연도	학교	취학 기간	졸업 자수	진로	출처
1920	河陽	4년	17	결정: 大邱高普, 培材學校, 大邱信明女學校	동 210329
1921	淸州	6년	20	결정: 실무 4, 고보 2, 상업 6, 京城鐵道學校 3, 教員養成所 4, 사범 1	동 220329
1921	潭陽	6년	10	결정: 光州高普 4, 光州農業 1, 光州高普 教員養成所 2, 가사·실업 3	동 220407
1922	仁川	6년	남 22 여 5	지원(남): 仁川商業 7, 京城第一高普 3, 京城工業 3, 京城第二高普 2, 鎮南浦商工業 1, 京城鐵道學校 1 지원(여): 京城女高普 3, 은행·회사 2	조 230320
1922	群山	6년	남 26 여 5	지원: 群山中學 1, 群山農業 2, 全州高普 3, 忠南師範 2, 公州高普 1, 中央高普 1, 京城女高普 4	조 230327
1923	晋州	6년	남 50 여 10	지원: 慶南師範 남자 22, 여자 5, 晋州農業 11, 京城第一高普 5, 京城女高普 1, 大邱高普 5, 中央高普 2, 釜山第一商業 1, 釜山第二商業 5, 善隣商業 1, 仁川商業 2, 釜山中學 1, 실업 2, 가업 16	동 240306
1923	密陽	6년	-	지원: 釜山第二商業 12, 大邱高普 10, 慶南師範 9, 東來高普 8, 慶北師範 7, 京城師範 6, 中央高普 5, 京城第一高普 3, 大邱商業 3, 京城女高普 1, 馬山高女 1, 馬山商業 1, 密陽農蠶 20	동 240309
1924	群山	6년	남 55 여 16	지원(남): 고보 6, 중학교 4, 농업 4, 상업 6, 사범 2 지원(여): 京城女高普 대다수, 群山高女 1	조 250317
1924	仁川	6년	남 88 여 19	지원(남): 상급학교 47, 구직 3, 가업 38 지원(여): 상급학교 5, 구직 1, 가업 13	조 250320
1924	密陽	6년	남 52 여 5	지원: 사범 6, 상업 5, 고보 7, 농업 3, 密陽農蠶 17, 中東學校 3	조 250322
1924	白川	6년	-	졸업자 지원(합격): 黃海師範 7(5), 海州高普 1(1), 培材高普 1(1), 養正高普 1(1), 開城商業 3(2), 京城鐵道學校 6(0), 京城女高普 1(0) 5학년 수료자 지원(합격): 培材高普 1(1), 京城第二高普 2(1), 沙里院農業 4(2), 普成高普 1(1)	조 250403
1924	麗水	6년	-	결정: 京城第一高普 1, 光州高普 4, 光州師範 2, 麗水水產 1, 釜山商業 3, 淑明女高普 1, 光州須彼亞女學校 3	조 250412

주: 1) '고보'는 고등보통학교, '여고보'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상업'은 상업학교, '사범'은 사범학교, '농업'은 농업학교, '공업'은 공업학교, '상공업'은 상공업학교, '중학'은 중학교, '고여'는 고등여학교, '농집'은 농집학교, '수산'은 수산학교를 의미함

2) '매'는 《매일신보》, '동'은 《동아일보》, '조'는 《조선일보》를 의미함

3) '170222'는 1917년 2월 22일을 의미함

4) 희망 진로의 복수 회답 여부 등 각 사례의 상세한 조사 기준은 알 수 없음

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學歷을 기초로 하는 단계적 학교체계를 완성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면 ‘중등학교 입학에 보통학교 졸업이라는 學歷이 필수였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차 조선교육령과 제2차 조선교육령은 모두 중등학교 입학 자격으로 보통학교 졸업이라는 學歷과 함께 보통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學力”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겠다.

제1차 조선교육령 아래에서 고등보통학교 입학자 선발은 무시험입학과 시험입학의 병용으로 진행되었다. 무시험입학 제도는 추천으로 입학 허가를 주는 제도였다. 그중 하나는 고등보통학교 졸업 후에 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거쳐 보통학교 훈도가 될 것을 맹세한 자를 도장관(도지사)이 추천하는 것 이었다.<sup>7</sup> 다른 하나는 성적이 우수한 보통학교 졸업자를 보통학교장이 추천 하는 것이었다.<sup>8</sup>

더 주목되는 것은 추천 입학자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학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고등보통학교 입학 자격을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나 又는 此와 同等 以上의 學力を 有하는 者”라고 규정했고<sup>9</sup> 관립 고등보통학교는 이와 동일한 문언을 제시하여 학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졸업 學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6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취학욕구의 고조」, 『역사교육』 136(2015).

7 《매일신보》, 1917년 2월 9일.

8 《매일신보》, 1915년 3월 19일; 《조선총독부관보》 제1033호(1916년 1월 17일); 《매일신보》, 1917년 2월 9일; 《매일신보》, 1918년 2월 19일; 《조선일보》, 1921년 2월 23일; 《조선총독부관보》 제2857호(1922년 2월 23일). 성적 우수자를 무시험으로 입학시키는 제도는 통감부 시기에도 실시되었다. 《황성신문》, 1910년 2월 22일. 보통학교장 추천 제도는 1923년도까지 실시된 것이 확인된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20호(1923년 1월 9일).

9 「조선교육령 제13조」, 《조선총독부관보》 제304호(1911년 9월 1일).

學力を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각 학교는 한 종류의 선발시험을 1년에 한 번만 실시했다.<sup>10</sup> 이것은 관립 고등보통학교가 學歷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동등한 입장에 두고 동일한 學力 시험을 보게 한 것, 그리고 합격한 學歷 비소유자를 學歷 소유자와 “동등 이상의 學力”의 소유자라고 간주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에서도 비슷했다.<sup>11</sup> 이상의 검토로 제도적으로는 보통학교를 경유하지 않아도 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안에 學歷을 기초로 하는 단계적 학교체계를 구축했지만, 보통학교의 부족과 여러 제도의 미비 때문에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 과정에서 學歷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단, 그렇다면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반드시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되는 셈인데, 이 시기 중등학교 입학자 중에 많은 수는 보통학교 졸업자였다. 실제로 1910년대 조선 전체 관립 고등보통학교의 전체 입학자 중 보통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대였다.<sup>12</sup> 그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한 사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學力에 의한 입학자 선발시험 과목이 국어(일본어)·조선어 및 한문·산술이었고 그 수준이 “보통학교 졸업 정도”였다는 사실과<sup>13</sup> 당시의 교육 상황에서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學力を 습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교육기관이 보통학교였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중등학교

10 《조선총독부관보》, 제1031호(1916년 1월 14일); 《조선총독부관보》 제1033호(1916년 1월 17일); 《조선총독부관보》 제1339호(1917년 1월 24일) 등.

11 1916년도 부산상업학교와 인천상업학교, 1917년도 양정고등보통학교, 1918년도 휘문고등보통학교, 1920년도 배재고등보통학교의 사례. 《조선총독부관보》 제1047호(1916년 2월 2일); 《조선총독부관보》 제1057호(1916년 2월 15일); 《매일신보》, 1917년 2월 15일; 《매일신보》, 1918년 2월 23일; 《매일신보》, 1920년 3월 25일.

12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63~64쪽.

13 《조선총독부관보》 제1033호(1916년 1월 17일).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선발시험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學力’을 습득하기 위해 보통학교에 취학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조선총독부는 學歷을 기초로 하는 단계적 학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중등학교 취학 이전에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규정했고, 이를 통해 중등학교 취학을 희망하는 조선인을 보통학교에 흡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 2. 보통학교 비졸업자에 대한 學力 검정시험 실시

1922년에 식민지 조선의 교육을 다시 규정하는 기본 법령이 제정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이 그것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을 제1차 조선교육령과 비교하면 고등보통학교 입학 자격에 관한 조문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又는 朝鮮總督의 定호는 바에 依호야 此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有호다 認定된 者”로 수정된 것이다.<sup>14</sup> 이에 따라 “조선총독의 정호는 바”, 즉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고등보통학교규정에서 고등보통학교 입학자 선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게는 學力 검정시험을 부과하여 “동등 이상의 學力”의 유무를 판정하고 그 합격자와 보통학교 졸업자에게 선발시험을 실시할 것이 정해진 것이었다.

제42조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호는 者는 第一學年の 入學에 關하야 修業年限 六年인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有호 者로 認定.

[…]

3. 國語, 朝鮮語, 算術, 日本歷史, 地理, 理科에 就호야 修業年限 六年인 普通學校

---

14 「조선교육령 제7조의 2」, 《조선총독부관보》 호외(1922년 2월 6일).

卒業 程度에 依한 試驗에 合格한 者. […]

[…]

제43조 第一學年 入學志願者의 數가 入學케 할 人員을 超過할 時는 試驗에 依한  
야 入學者를 選拔함. […]<sup>15</sup>

사범학교규정<sup>16</sup>과 실업학교규정<sup>17</sup>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내지준거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중등학교 입학자를 균질적으로 정리하여 중등학교의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한 것이었다. 관립(공립) 고등보통학교에서는<sup>18</sup> 1923년도부터 이 규정에 따라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조선어·산술·일본 역사·지리·이과의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學力 검정시험이 실시되었고, 그 합격자와 보통학교 졸업자에게 국어·조선어·산술의 선발시험을 치르게 했다.<sup>19</sup> 사립 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사범학교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선발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sup>20</sup>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 방법이 새롭게 규정된 것으로 인해 조선인의 보통학교 취학 동기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종래와 달리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하지 않은 자의 사이에 대우 차등이 매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보통

15 「고등보통학교규정 제42-43조」, 《조선총독부관보》, 제2854호(1922년 2월 20일); 박철희, 앞의 글(2002), 62쪽.

16 「사범학교규정 제73-76조」, 《조선총독부관보》 제2857호(1922년 2월 23일).

17 실업학교규정 제12조에 각종 실업학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文部省令의 定한 當該學校 規程”에 따르도록 정해졌다. 예를 들어, 농업학교의 경우는 농업학교규정 제3조에 시험으로 學力을 검정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관보》 제2534호(1921년 1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 제2850호(1922년 2월 15일).

18 관립 고등보통학교는 1925년에 공립이 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호외(1925년 4월 1일).

19 《조선총독부관보》 제3120호(1923년 1월 9일).

20 1924년도 송도고등보통학교와 개성상업학교, 1926년도 상주농업학교와 경상남도사범학교의 사례. 《조선일보》, 1924년 2월 18일; 《동아일보》, 1926년 2월 11일.

학교 졸업의 우회로로 學力 시험을 활용하려면 그때까지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과목 수가 종래의 3과목에서 6과목으로, 즉 2배 늘어났다. 또 1920년 조선교육령 중 개정으로 보통학교 수학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sup>21</sup> 시험의 명목적 수준이 “보통학교 졸업 정도”인 것은 종래와 동일했지만 실질적인 수준은 더 높아졌다. 그 결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學力を 보통학교 이외에서 습득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져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學力を 양성해 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보통학교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공립 보통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sup>22</sup>

그러나 보통학교, 그중에서도 6년제 보통학교의 보급은 아직 많이 불충분했다. 따라서 중등학교 취학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입시생이 學力 검정시험을 봐야 했다. 하지만 혼자 대비하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학교 다음가는 선택지로 사립 각종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 등 민간 교육기관의 수요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함홍군 “有志”는 4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이 중등학교에 입학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1923년에 함홍 향교 내에 보통학교 5, 6학년 학과를 1년간에 가르치는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했다.<sup>23</sup>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보통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교육기관도 많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민간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다행인 것으로 1920년대에

---

21 《조선총독부관보》 제2477호(1920년 11월 12일).

22 예를 들어 충청남도 서산군 대호지면에는 공립 보통학교가 없었던 1920년에 “中學科 準備生”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普明講習所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1922년에 같은 면에 6년제 공립 調琴普通學校가 설립되자 강습소는 해산되었고 모든 학생이 이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동아일보》, 1922년 5월 17일; 조선총독부 학무국(편), 『大正十五年編纂 朝鮮諸學校一覽』(1927), 153쪽; 渡部學·阿部洋(편),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54』(東京: 龍溪書舖, 1988) 수록.

23 《조선일보》, 1923년 4월 15일.

불충분하기는 하나 중등학교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설립 시기와 학교 간 인기도에 따라서는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중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1921년에 설립된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京城第二高等普通學校)는 설립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제이고등보통학교는 직원과 설비에서 제일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하지만 입학이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여 입학 지원자를 유도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낮았다.<sup>24</sup> 보통학교 비졸업자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학교의 1926년도 졸업생 64명 중 6명은 입학하기 전에 보통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전혀 없었다. 또 1922년에 설립된 경성고등보통학교(鏡城高等普通學校)의 입학자 전체에서 보통학교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3년 45.0%, 1924년 69.1%, 1926년 76.5%였다. 조선 전체 사립 고등보통학교의 전체 입학자 중 보통학교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6년 70.6%, 1927년 84.3%였다.<sup>25</sup> 실업학교와 공립 사범학교의 경우에는 더 널리 문호가 열려 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 III. 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의 설치·운영·폐지

#### 1.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으로 인한 혼란

1910년대 보통학교 취학자의 주류는 서당에서 납득할 만큼 한문을 배운

---

24 『동아일보』, 1921년 2월 24일.

25 박철희, 앞의 글(2002), 63~67쪽.

후에 진학이나 화이트 칼라 취직을 위해 보통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서당, 보통학교 그리고 중등학교까지 취학하기에 필요한 오랜 세월과 금전을 투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출신자였다. 그리고 긴 서당 교육을 거쳐 보통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입학연령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또 서당에서 얼마나 오래 배울지는 각자의 판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입학연령이 일정하지도 않았다.

보통학교 교육의 지육·덕육·체육 중 덕육에서 특별히 중시된 것은 일본제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함양하는 것과 일상적 훈련을 통해 근대적 규율을 습득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910년대 보통학교 취학자의 특징 중 연령의 불균일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발달단계가 다른 6세 아동과 10대 후반 청년을 동일 집단에서 교육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0년대에 들어가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가 모집 정원을 크게 상회하는 ‘취학난’ 현상이 발생하자 조선총독부는 그에 대한 대응도 할 겸 제1학년 입학자를 연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연령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세로 설정되었다.<sup>26</sup>

입학연령 제한의 결과 나이가 많은 아동의 앞길은 제도적으로 가로막혔고, 이로써 그들의 인생 설계는 하룻밤에 허사가 되었다. 그들은 당연히 “나는 너희가 만으셔 안이 됨닛가? 나는 日語를 몰나 안이 되지요.”라고 울부짖고 “學生界에 落伍되야 社會의 不公平함을 怨하고 甚한 者는 前途를 悲觀하는 狀態”가 되었다.<sup>27</sup> 그러한 연령 초과 아동의 불만은 조선 사회를 어지럽히고 식민통치 비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좌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1922년 5월 도지사 회의에

26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앞의 글(2024), 147~152쪽; 158~163쪽.

27 《조선일보》, 1921년 4월 18일; 《동아일보》, 1924년 2월 26일.

서 “2부교수, 야간수업 기타 속성적 교육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sup>28</sup>

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 정원을 늘리고 연령 초과 아동을 보통학교 정규과정에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당장의 대책으로는 입학자 선발에서 빠진 연령 초과 아동으로 1학급을 추가 편성하고 원래의 1학급에 더해 총 2학급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부 교수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했다. 1922년도 충청남도 청양보통학교(青陽普通學校)의 사례와 경상 북도 구미보통학교(龜尾普通學校)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sup>29</sup> 그러나 이 방법은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의 원래 취지와 상반된 것이었다. 게다가 이 방법으로는 응급책으로 제시된 교원 정원 증가를 고정해야 했고 또 새로운 교실도 준비해야 했다.<sup>30</sup> 재정난 안에서 조선 전체에 보통학교를 증설하려 계획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방법을 피해야 했다.

## 2. 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의 설치와 운영

따라서 각지의 공립 보통학교에 다양한 명칭의 비정규 교육기관이 설치되었다. 명칭이 다양했던 이유의 하나는 신문이 편의적으로 원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보도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교육기관의 설치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도(道)이기 때문이었다. 도 당국이 이러한 교육기관을 조선총독의 공인기관으로 할 것을 선택하면, 조선총독에게 “普通學校에 類似한 各種學校”<sup>31</sup>로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되면 도 고시로 사실을 공표

---

28 《동아일보》, 1922년 5월 11일.

29 《동아일보》, 1922년 4월 19일; 朴興玉, 「二部教授に就いて」, 《조선교육》 7-1(1922년 10월 호), 75~77쪽.

30 《동아일보》, 1923년 4월 24일.

31 「보통학교규정 제6조」, 《조선총독부관보》 제2850호(1922년 2월 15일).

했다.<sup>32</sup> 그때는 도마다 ‘부설 속수학교’(경상남도·평안남도·함경북도), ‘부설 육영학교’(황해도), ‘부설 ○○학교’(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함경남도), ‘부설 ○○ 육성학교’(전라북도), ‘부설 ○○ 속성학교’(강원도) 등으로 명명 되었다.

한편 몇 개 도에서는 공인 교육기관 설치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연구의 조사가 불충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도에 따라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성부는 독자적으로 “公立 普通學校 學習會 規程”을 정하여 보통학교 부대 사업으로 “학습회”를 설치했다.<sup>33</sup> 또 경기도 안성군에서는 간이농업학교를 개편하여 “普通學校 入學年齡 超過한 者를 收容하야 普通學校 學科를 二個年間 速成 教授”했다.<sup>34</sup> 그 외에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速修會”, “午後班”, “夜學”, “講習會”, “講習科”, “速成科”, “講習所” 등의 명칭으로 유사한 교육기관이 운영된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다.<sup>35</sup> 이와 같이 명칭이나 공인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러한 교육기관은 모두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에 의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속수학교’로 총칭한다.

각 도 안에서 속수학교가 설치되는 과정에서는 현장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많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황해도 송화보통학교(松禾普通學校)에서는 1922년도 입학 지원자 중 102명이 연령 초과 아동이었다. 황해도 당국

32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고시 제49호」, 《조선총독부판보》 제3843호(1925년 6월 9일).

33 《동아일보》, 1922년 5월 17일.

34 《동아일보》, 1921년 3월 30일. 단 이 학교는 제2차 조선교육령 발포 후에 농업보습학교로 변경하도록 신청되었다. 《동아일보》, 1922년 5월 18일.

35 《동아일보》, 1922년 4월 8일; 《동아일보》, 1922년 6월 6일; 《동아일보》, 1922년 6월 12일; 《동아일보》, 1922년 9월 20일; 《동아일보》, 1923년 4월 9일; 《조선일보》, 1923년 4월 11일; 《조선일보》, 1924년 4월 7일; 《조선일보》, 1924년 4월 7일; 《동아일보》, 1925년 5월 20일; 《동아일보》, 1928년 6월 20일.

표2-조선총독 공인 속수학교의 설치와 폐지

(단위: 개)

구분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총계
1	충남	설치	0	22	0	0	0	0	22
		폐지	0	0	6	7	4	0	17
2	전북	설치	0	0	1	0	0	2	1
		폐지	0	0	14	0	8	0	22
3	전남	설치	26	29	10	2	1	0	68
		폐지	0	0	0	6	2	0	8
4	경북	설치	45	11	5	1	0	0	62
		폐지	0	3	34	23	2	0	62
5	경남	설치	0	0	25	2	0	0	27
		폐지	0	0	0	10	29	0	39
6	평남	설치	3	12	16	4	0	0	35
		폐지	0	0	1	4	19	8	33
7	강원	설치	4	15	3	0	0	0	22
		폐지	0	0	0	10	6	1	17
8	총계	설치	78	89	60	9	1	2	240
		폐지	0	3	55	60	70	9	198

주: 1)《조선총독부관보》「지방청 공문」란 및 《조선교육시보》「고시」란을 토대로 작성함

- 2)〈표2〉기재 사례 이외의 공인 속수학교로 황해도 폐지 사례 1건(1928년), 함경남도 설치 사례 3건(1925년), 함경북도 폐지 사례 5건(1924년)을 확인함
- 3) 경기도·충청북도·평안북도의 공인 속수학교 설치·폐지 사례는 확인할 수 없음. 단, 공인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경기도·충청북도에서 많은 속수학교가 운영된 것을 각종 신문 기사에서 확인함

은 “事勢 不得已 收容치 못하겠다.”라고 냉정하게 배제했지만 보통학교장과 군수가 황해도 안의 여러 방면과 협상하여 같은 해 9월에 “學務 當局의 認可를 受하야” 받은 보조금 200원을 기초로 하여 “育成部”를 설치했다.<sup>36</sup> 강원도

36 《동아일보》, 1922년 5월 26일; 《조선일보》, 1924년 5월 31일.

평강보통학교(平康普通學校)에서는 1922년에 학교 당국의 독자적인 대응으로 “講習”을 실시한 후에 1923년에 군수·도 평의원·면장 등이 도 당국과 교섭하여 허가를 받아 “速成科”를 개설했다. 이것은 “附設 平康 公立 速成學校”로 조선총독에게 인가되었다.<sup>37</sup> 함경남도 이원보통학교(利原普通學校)와 차호보통학교(遮湖普通學校)는 독자적으로 “速修學校”를 경영하고 후일에 “附設 觀城學校”·“附設 觀海學校”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았다.<sup>38</sup>

속수학교의 규모에 관해서는 1922년도 경성에서 14학교·20학급·1,140명, 1923년도 평안남도에서 14학교·24학급·1,530명이라는 보고가 있다.<sup>39</sup> 1학급 당 50~70명, 1학교 당 80~110명 정도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교원은 전임 교원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학교 교원이 겸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22년도 전라북도 제원보통학교(濟原普通學校) 부설 “育英學校”에서는 보통학교 훈도가 오후에 약 3시간 수업했고 1924년도 경기도 개성제이보통학교(開城第二普通學校) 부설 “開城講習所”에서는 2명의 전임 교원이 오전부터 5시간 수업했다.<sup>40</sup>

교육 대상은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 전체가 아니라 연령 초과 아동에 한정되었다. 이것은 많은 신문기사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특히 예천보통학교(醴泉普通學校)의 사례에 명확하다. 1922년도 예천보통학교에서는 1학년 정원이 60명인데, 입학 지원자가 223명이나 되었다. 이에 학교 당국은 “滿十歲 以下”的 아동 60명을 추가로 정규 과정 1학년에 입학하게 하고 2부 교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滿十

---

37 《동아일보》, 1922년 4월 2일; 《조선일보》, 1923년 4월 24일; 《조선총독부관보》 제3209호 (1923년 4월 25일).

38 《조선일보》, 1925년 6월 19일; 《조선총독부관보》 제3843호(1925년 6월 9일).

39 《동아일보》, 1922년 5월 17일; 《조선교육시보》 제2호(1923년 12월), 74쪽.

40 《동아일보》, 1922년 10월 1일; 《조선일보》, 1924년 4월 7일.

歲 以上”의 아동 100명은 “速成科”에 편입했다. 이는 “附設 有隣學校”로 조선총독에게 인가되었다.<sup>41</sup>

1개월 수업료는 50전~1원으로 설정되었다.<sup>42</sup> 이는 이 시기 보통학교 수업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시기에 급속히 인상된 보통학교 수업료를 납입할 수 있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부유했을 것을 감안하면,<sup>43</sup> 속수학교는 그러한 가정의 자제들을 입학 대상으로 상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이 장의 처음부터 이야기해 왔듯이 속수학교는 1910년대 보통학교 취학자의 주류이고,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으로 배제된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인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조선인들은 ‘취학난’ 구제 응급조치로 2부 교수를 실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一, 二部間에 差別을 設치 안코” 정규 과정으로 2부 교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sup>44</sup> 그 예시로 경성부 정동 조선인 총회 연합회(京城府町洞朝鮮人總會聯合會)의 진정을 들 수 있다.<sup>45</sup> 하지만 경성부는 조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회’를 설치하여 비정규 교육과정을 2부 교수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sup>46</sup> 희망과 다른 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반응은 너무 좋지는 않았고 “입학하기를 질기지 아니하는 사람”<sup>47</sup>도 있었다. 실제로 경성부는 모집 마감일을 몇 번 연기했지만 정원을 완전히 채울 수 없었다.<sup>48</sup>

41 《동아일보》, 1922년 5월 16일; 《조선총독부관보》 제2969호(1922년 7월 6일).

42 《동아일보》, 1922년 5월 17일; 《동아일보》, 1922년 6월 6일; 《조선일보》, 1923년 1월 23일; 《조선일보》, 1924년 2월 16일; 《시대일보》, 1924년 5월 2일.

43 한우희, 「日帝殖民統治下 朝鮮人의 教育熱에 관한 研究」, 『교육사학연구』 2·3(1990).

44 《동아일보》, 1922년 5월 13일.

45 《동아일보》, 1922년 4월 14일.

46 《동아일보》, 1922년 5월 17일.

47 《동아일보》, 1922년 5월 26일.

48 《동아일보》, 1922년 5월 28일; 《동아일보》, 1922년 6월 4일; 《동아일보》, 1924년 1월 19일.

단, 지방에서는 속수학교도 어느 정도 환영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주보통학교(海州普通學校)에서는 1922년 7월에 “附設 又新學校”가 인가되었을 때 학생을 모집한 결과 180여 명이나 지원했기 때문에 125명만 입학시키고 2학급으로 나눠 교수하기로 했다.<sup>49</sup> 그러한 반응 차이는 유력 사립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근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 등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연령 초과 아동의 부형과 그들의 요청을 받은 지역 ‘유지’가 속수학교 설치를 위하여 진정 활동을 전개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 당국과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그러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속수학교의 취학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간이었고 학교 당국은 그 기간 내에 보통학교 1~4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을 주입했다.<sup>50</sup> 이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학생은 보통학교 ‘본과’로 편입할 수 있었고 그 후 특별히 문제없이 지내면 보통학교 졸업이라는 學歷을 취득할 수 있었다.<sup>51</sup> 즉, 속수학교는 변칙적으로 보통학교 졸업 學歷 소유자를 산출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통감부의 기본 교육정책 방침을 계승하여 조선 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學歷을 기초로 하는 단계적인 근대 학교체계로 일원화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입학연령 제한 정책으로 발생한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이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

속수학교 제도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보통학교 교육 자원의 알뜰한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합리적이었다.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당시 보통학교

---

49 《동아일보》, 1922년 7월 17일.

50 《동아일보》, 1922년 5월 17일; 《동아일보》, 1922년 7월 17일; 《조선일보》, 1924년 2월 16일; 《조선일보》, 1924년 2월 19일; 《동아일보》, 1924년 3월 1일; 《조선일보》, 1924년 4월 7일; 《조선일보》, 1924년 5월 31일; 《동아일보》, 1925년 4월 4일.

51 《동아일보》, 1922년 5월 17일; 《조선일보》, 1924년 5월 31일; 《동아일보》, 1925년 4월 4일.

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퇴학자가 다수 발생했다.<sup>52</sup> 그렇기 때문에 제1학년 입학이 아주 어려울 때도 상급 학년에는 공석이 있었다. 속수학교 수료자로 이 공석을 메우면 설비와 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셈이었다.<sup>53</sup>

속수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은 대체로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이것은 學歷의 부여·취득이라는 점에서 속수학교의 설치 목적과 학생의 취학 목적이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또 속수학교는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시험용 學力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교과 편성을 배려했다. 2년 만에 보통학교 4년간에 배우는 분량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일정한 내용 생략이 필요했는데, 생략되는 교과목은 창가와 체조 등이었고,<sup>54</sup> “중등 정도의 학교 입학에 적당한 修身 國語 算術 朝鮮語”는 대체로 보통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수되었다.<sup>55</sup>

물론 모든 학생이 속수학교의 주입교육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안주보통학교(安州普通學校) “부설 속수학교”에는 1923년도 말에 학생이 106명 있었지만, 1924년도 말 재학생은 65명이었다.<sup>56</sup> 속수학교 입학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많은 학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식민 당국은 이것에 아무 아쉬움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 부족을 부끄러이 여겨 중등학교 취학을 포기했다면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에 의한 혼란의 수습이라는 속수학교 설치 목

<sup>52</sup> 김부자(저), 조경의·김우자(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교육』(서울: 일조각, 2009), 91~92쪽; 金富子, 『植民地期朝鮮の教育とジェンダー』(東京: 世織書房, 2005), 65쪽.

<sup>53</sup> 경성부가 상급학년 퇴학자 때문에 생긴 빈자리를 유효하게 활용하려고 모색한 사실에 관해서는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자를 참조할 것.

<sup>54</sup> 《동아일보》, 1922년 5월 26일.

<sup>55</sup> 《매일신보》, 1922년 5월 17일.

<sup>56</sup> 《동아일보》, 1924년 2월 21일; 《동아일보》, 1925년 3월 30일.

적은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속수학교 학생 중에서 보통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학생은 ‘소수의 성적 우수자’만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주의에 의한 자기 비하로의 유도와 중등학교 취학 욕구 냉각의 메커니즘은 원래 속수학교 제도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간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가 식민 당국의 의도적 조작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어쩌면 우리도 공유하는) 교육관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속수학교에 내장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혼란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단 보통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자가 성적 우수자만인 것을 조선인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sup>57</sup> 1923년 4월에 안주 보통학교에 속수학교가 설치되었을 때,<sup>58</sup> 보통학교장은 “學齡超過者로 하야 금 速修科에 入學케 하야 四年 程度를 二個年에 맟추고 五學年에 編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학생 중에는 단기간에 보통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려고 보통학교 ‘본과’를 퇴학하여 속수학교에 입학한 자도 많았다. 그러나 속수학교 폐지가 결정된 1925년 3월에 보통학교 당국은 성적 우수자 5명만 제5학년에 수용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진로를 잊은 학생의 부형과 지역사회 인사는 “速修學校의 無價值한 것과 無實力하게 教授한 것을 批難”했다. 속수학교 설치 당시의 보통학교장은 이미 전임했고 현 교장은 “前事는 모른다”라고만 말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그때 수료생 전원이 제5학년에 편입할 수 없었던 것은 수료생의 學力이 부족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식민 조선의 교육 제도 미비와도 관계가 있었다. 당시 조선에는 4년제 보통학교가 다수 존재했는데,

<sup>57</sup> 다음의 신문 기사를 재구성했다. 《동아일보》, 1925년 3월 30일; 《조선일보》, 1925년 4월 3일; 《동아일보》, 1925년 4월 4일.

<sup>58</sup> 《조선총독부관보》 제3215호(1923년 5월 2일).

그 졸업생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려면 6년제 보통학교에 편입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안주군에는 6년제의 안주보통학교와 4년제의 만성보통학교(萬城普通學校) 및 입석보통학교(立石普通學校)가 있었다. 즉, 속수학교 수료생 65명은 사실은 안주보통학교 제5학년 정원 중에 생긴 빈자리를 둘러싸고 만성보통학교 졸업생 60여 명 및 입석보통학교 졸업생 60여 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속수학교 수료생 중에서 제5학년에 편입한 것은 6명뿐이었고, 나머지 편입자는 만성보통학교 졸업생 7명과 입석보통학교 졸업생 5명이었다. 안주보통학교 당국은 속수학교 수료생을 정규 과정에 편입시키는 데는 동의했지만 남은 학생들은 제2~4학년에 편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속수학교 제도는 미사용의 보통학교 교육 지원을 알뜰하게 활용하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으나 사실은 그러한 미사용 교육 지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만큼 조선의 초등교육 상황은 빈약했다.

### 3. 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의 폐지

마지막으로 속수학교의 폐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표2>를 보면 속수학교는 대체로 1922~1924년에 설치되었고, 1924~1926년에 폐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3>은 1922년부터 1928년까지 《조선총독부관보》와 《조선교육시보》를 조사하여 설치 시기와 폐지 시기 모두 확인한 공인 속수학교 157개에 대하여 존속 기간과 학교 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속수학교는 1기 2년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속수학교 폐지의 배경으로는 1924년 이후에 교육정책 기조가 ‘내지준거주의’에 기초하는 교육기관 중설·정비로부터 ‘산업제일주의’에 기초하는 실

표3-공인 속수학교의 존속 기간

(단위: 개)

존속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속수학교 수	31	92	25	7	2

주: 1) 《조선총독부관보》「지방청 공문」란 및 《조선교육시보》「고시」란을 토대로 작성함

2) 존속 기간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업교육 중시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sup>59</sup> 예를 들어, 경상남도 당국과 사천군수는 1926년도 사천보통학교(泗川普通學校) 5학년 1학급을 2학급으로 늘리고 총 12학급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학급 수를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속수학교를 폐지했다.<sup>60</sup> 저급 농업 노동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제일주의’ 아래에서는 보통학교 4년제를 6년제로 개편하는 속도가 늦어졌는데,<sup>61</sup>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상급 학년 학급 수 증가와 중등학교 진학 지원 정책이 경시된 것이었다. 또 황해도 봉산군 학교평의회가 1925년도에 “經費問題”를 이유 중 하나로 들어 속수학교 4개 폐지를 결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sup>62</sup>

단 봉산군 학교평의회는 속수학교를 폐지할 때 “其他 理由”도 들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신에 1925년도 평안남도 안주군 만성보통학교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sup>63</sup> “速修科生은 定員에서도 應募者가

59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앞의 글(2024), 155~158쪽.

60 《조선총독부관보》 제3468호(1924년 3월 8일); 《조선일보》, 1926년 3월 17일; 《조선총독부관보》 제4116호(1926년 5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편), 앞의 책(1927), 227~228쪽.

61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121쪽; 박진동, 「日帝強占下 (1920년대) 普通學校 6年制 昇格運動의 展開와 歸結」, 『역사교육』 102(2007);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앞의 글(2024), 175쪽.

62 《조선일보》, 1925년 3월 20일.

63 《조선일보》, 1925년 3월 23일.

넘어 적어서 同科는 中止하는 수밖에 無하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速修科” 입학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sup>64</sup>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시기 만성보통학교 “本科” 입학 지원자도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1922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例年에는 恒常 定員에서 超過한 應募者가 있어서 入學식험에 無限 困難하였는데”, 1925년에는 정원 미달로 “同校의 職員과 學務委員들은 三日間 各處에 巡回하여 入學生은 募集하여 充當”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벼렸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신문기사는 “農村이 貧乏한 所以”라고 말하고 제목을 「貧窮으로 入學 激減」이라고 붙였다. 즉, 《조선일보》는 ‘농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가 감소했다.’라고 설명한 셈인데, 이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년 전의 ‘취학난’을 역전할 정도로 급격한 빈궁화가 이 시기에 진행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65</sup> 단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의 감소는 다른 의미에서 농촌의 빈궁과 관계가 있었다. 농촌이 가난했기 때문에 보통학교 입학을 지원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래 적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연령 제한 때문에 입학 지원을 못하게 되거나 모두 입학하면 입학 지원자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만성보통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의 주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나이가 많은 아동이었지만, 평안남도 당국은 1923년도까지 제1학년 입학연령을 10세 미만으로 제한하기 시작했고, 1925년도부터 엄격하게 제한했다.<sup>66</sup> 10세 이상의 아동은

<sup>64</sup> 만성보통학교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이 학교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안주군 소재의 4년제 보통학교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안주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에서 발생한 보통학교 편입을 둘러싼 혼란을 눈앞에서 봐서 속수학교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

<sup>65</sup>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앞의 글(2024), 144~145쪽; 169~170쪽.

<sup>66</sup> 위의 글, 163쪽.

1925년까지 가능하면 보통학교에 입학하고 그렇지 못하면 속수학교에 입학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10세 미만의 아동은 종래라면 아직 서당에 다녔을 나이이지만 1923년도까지 입학연령 제한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서둘러 한꺼번에 보통학교에 입학을 지원했다. 또 제2차 조선교육령 발포 이후 6세 이상 아동도 보통학교 입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sup>67</sup> 이러한 6세 이상 10세 미만의 입학 지원자 증가가 1923년도 이후 10세 이상의 입학 지원자 감소분을 메워 입학 지원자 수 전체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sup>68</sup> 하지만 1925년도 이후의 입학 지원자는 그때 6세가 된 아동과 그때까지 입학하지 않았던 10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되었다. 3면 1교 정책으로 증가한 보통학교 모집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이 연령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아동만으로는 불충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 농민의 자제들은 아직 보통학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무리하여 보통학교에 입학하려는 의식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보통학교 “本科”는 ‘취학난’의 반대인 ‘모집난’으로 빠져 벼렸다.<sup>69</sup>

이렇게 생각하면 1925년도에 만성보통학교 “速修科” 입학 지원자가 감소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1923년도 시점에 10세 이상, 즉 1925년도 시점에 12세 이상의 아동은 “速修科”에 입학하여 2년간의 과정을 수료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1923년도 시점에 8세 이상 10세 미만, 즉 1925년도 시점에 10세 이상의 아동들 중에 많

---

67 「조선교육령 제5조의 2」, 『조선총독부관보』 호외(1922년 2월 6일). 그때까지 8세 이상의 아동만 입학할 수 있었다. 「조선교육령 제10조」, 『조선총독부관보』 제304호(1911년 9월 1일).

68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앞의 글(2024), 163~171쪽.

69 위의 글, 171~176쪽.

은 수가 이미 보통학교 “本科”에 입학했고 “速修科”에 입학할 필요가 있는 아동은 일부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1925년도 시점에 6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보통학교 “本科”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速修科”에 입학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本科”에도 입학하지 않은 빈곤 아동은 “速修科”에 지원할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25년도에 “速修科”는 입학 지원자가 없어져 폐지되었다.

같은 시기에 평안남도 증산보통학교(甑山普通學校) 지역 주민의 움직임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했다.<sup>70</sup> 이 학교는 1908년에 설립되었지만 1925년 4월 당시에도 여전히 4년제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6년제로 학년을 연장하는 것을 크게 희망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은 학생 27명에 교원 1명이 충당되어 있었던 “附設 速修科”를 폐지하고, 그 교원에게 “本科” 5·6학년을 담당하게 하면 경비를 늘리지 않고 학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本科”를 졸업한 학생은 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체를 “速修科”에 입학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조선인이 “本科”를 충실히 만드는 것을 지향하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

#### IV. 사설학술강습회의 설립

속수학교 부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속수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연령 초과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표4〉의 사례를 대표로 하는 교육기관이 조선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 교육기관의 설립

<sup>70</sup> 《조선총독부관보》 제3251호(1924년 5월 12일); 《조선일보》, 1925년 4월 3일; 《조선총독부관보》 제4097호(1926년 4월 19일).

표4-연령 초과 아동 구제 사설학술강습회 사례

구분	기관명	설립 · 개편 연도	설립 · 개편 주체	소재지	동일 면 소재 공립보통학교
1	華城學院	1922	불분명함	京畿道 水原郡 水原面 南水理	水原普通學校
2	江華學院	1922	大東斯文會 江華支會	京畿道 江華郡 江華面	江華普通學校
3	大成學院	1922	유지	忠清北道 清州郡 清州面 大成町	清州普通學校
4	養英學院	1922	도 평의원	忠清南道 論山郡 江景面 黃金町 157番地	江景普通學校
5	青年學院	1922	光州青年會 智育部	全羅南道 光州郡 光州面	光州普通學校
6	育英義塾	1921	綾州青年 修養會	全羅南道 和順郡 綾州面	綾州普通學校
7	金陵學院	1923	金陵青年會	慶尚北道 金泉郡 金泉面	金泉普通學校
8	普明學院	1921	유지	慶尚北道 尚州郡 尚州面	尚州普通學校
9	大昌學院	1921	醴泉青年會	慶尚北道 醴泉郡 醴泉面 栢田洞	醴泉普通學校
10	文昌學院	1922	유지	黃海道 載寧郡 載寧面	載寧普通學校
11	明農學院	1922	유지	黃海道 凤山郡 萬泉面 萬金里	없음
12	普光學院	1922	天道教會	平安南道 安州郡 安州面	安州普通學校
13	義崇講習所	1922	南監理敎會	江原道 江陵郡 江陵面 大和町	江陵普通學校
14	育英學院	1922	유지	咸鏡南道 洪原郡 州翼面	洪原普通學校

주: 1) 각종 신문기사 및 조선총독부 학무국(函), 『朝鮮諸學校一覽』(1927)을 토대로 작성함

2) 화성학원은 水原商業會議所가 1910년에 설립한 商業講習所가 전신임

3) 명농학원은 西北學會에서 활동한 李達元이 1912년에 설립한 農務講習所가 전신임

목적은 중등학교 입학 學力 검정시험 및 선발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學力を 양성하는 것이었다. 설립 지역은 이미 공립 보통학교가 존재하는 군의 중심지였다. 공립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령 아동은 공립 보통학교가 있으면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공립 보통학교에서 배제된 연령

초과 아동은 공립 보통학교가 있어도 별도로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표4〉의 교육기관이 농촌 지역이 아니라 군의 중심지에 설립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연령 초과 아동은 농촌 지역에도 있었지만 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기에 면은 너무 좁아 군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광주군에서는 청년학원의 설립 취지를 선전하기 위해 광주 각 면에 “講演隊”가 파견되었다.<sup>71</sup> 또 안주군 보광 학원과 같이 “他郡에서 高齡 學生이 多數 雲集”할 경우도 있었다.<sup>72</sup> 김천군 금릉학원이 철도 당국과 기차 통학 정액제를 협상한 것도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서였다.<sup>73</sup>

〈표4〉에 나타난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출신 가정은 상대적으로 부유했지만 절대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시사점이 큰 것이 김천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소위 ‘박기호(朴基浩) 폭언 사건’<sup>74</sup>이다. 박기호는 김천군 김천면에 거주하는 “富豪”이며 김천유치원 운영과 금릉청년회관 수리에 대한 기부금 거출에 이름을 걸고 김천고등보통학교 기성회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지역 유력자 중의 한 명이었다.<sup>75</sup> 그러나 김천고등보통학교 기성회 발기인이 되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그는 “나는 돈이 잇스니 자식을 서울이나 일본으로 류학을 보낼 터인데 김천에 고등보통학교가 내게 무슨 소용이 되느냐?” “나로서는 절대로 업는 놈의 자식을

---

71 《동아일보》, 1922년 3월 18일.

72 1923년도 보광학원 우등생의 출신지와 연령은 박천군 18세, 정주군 16세, 안주군 20세였고 精勤生은 순천군에서 온 24세의 학생이었다. 《동아일보》, 1924년 4월 5일.

73 《조선일보》, 1925년 3월 5일.

74 백남곤, 「일제시기 김천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33쪽.

75 《조선일보》, 1923년 1월 18일; 《동아일보》, 1926년 11월 26일; 《동아일보》, 1926년 11월 26일; 《동아일보》, 1927년 3월 29일.

위하여 고성회에 들지 못하겠다”라고 외쳤다.<sup>76</sup> 지역사회 내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말해 버린 것이겠지만 그만큼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 최상층의 “부호”는 지역 내에 고등보통학교가 없으면 유학시키면 되는 것이지 고등보통학교 설립에 고생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sup>77</sup>

이러한 사정은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에 대한 대응에도 동일했다. 1920년 4월에서 12월까지 경상북도 내성보통학교(乃城普通學校) 학구 안의 연령 초과 아동 중에서 20명 이상이 경성의 사립 중동학교(中東學校)에 입학했는데, 그들은 “양반 자제”였다.<sup>78</sup> 중동학교는 교장 최규동(崔奎東)을 비롯하여 수학 전공 교원이 많아 수학 교육으로 유명한 사립각종학교였다. 이 학교는 각 1년간을 수학기간으로 하는 초등과·중등과·고등과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學力を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생들은 여기서 검정시험이나 전문학교 입학시험에 대비했다고 한다.<sup>79</sup> 내성보통학교 학구 안의 “양반 자제”들은 초등과에 입학하여 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 준비에 노력했을 것이다.

---

76 《조선일보》, 1927년 4월 14일.

77 지역사회 최상층 사람들이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 문포, 「帝下 高等普通學校 設立運動」,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도 참조할 것.

78 경상북도, 「公立學校長會諮詢問事項答申書」(1920), 渡部學·阿部洋(편), 『日本殖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16』(東京: 龍溪書舍, 1987), 39쪽. 또 경상남도 고성군의 연령 초과 아동의 보호자도 중동학교 유학을 선택지의 하나로 들었다. 《동아일보》, 1921년 3월 31일.

79 김경미, 「학교운영 논리와 과시즘 교육체제」, 방기중(편), 『일제하 지식인의 과시즘체제 인식과 대응』(서울: 혜안, 2005), 203~206쪽. 이 연구에 따르면, 중동학교는 1923년에 본 과를 고등보통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5년제로 개편하였고 1928년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의 무시험검정 학교로 지정되었다. 또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보통학교 4학년을 수료한 후, 1925년에 중동학교 속성과에 입학하고 1년 후에 본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중동학교 4학년을 수료한 후 1929년에 일본에 건너 1930년에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경과에 입학하였다. 이병철, 『湖巖自傳』(서울: 중앙일보사, 1986), 4~15쪽.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유해 자제를 보통학교에 취학시킬 수는 있으나 경성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는 없고 또한 경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군 내 또는 인근 군에 교육기관이 필요했다. 이것은 고등보통학교의 경우도 고등보통학교 입학 시험을 위한 學力 양성 기관의 경우도 동일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 군 단위의 지역사회 유력자들이 설립을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지역의 소위 '유지' 였고,<sup>80</sup> 초기 청년회, 천도교와 감리교 등 종교단체 그리고 유림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도 있었다. 단 종교단체가 설립 주체인 경우에도 학생의 목적과 다른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웠다. 천도교가 설립한 안주군 보광학원은 “宗敎學校이나 教理나 聖經은 조금도 가르치지 안는다 하여 社會의 好評”을 얻었다.<sup>81</sup>

지역사회에 설립할 學力 양성 기관으로는 먼저 사립각종학교를 상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립각종학교는 영속적 기관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립 하려면 사립학교규칙에 따라 번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sup>82</sup> 또 사립학교규칙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립각종학교의 설립 인가를 얻으려면 수만 원이라는 거액의 기본 재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sup>83</sup>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는 「私設學術講習會에 關한 件」<sup>84</sup>에 따라 1년제 사

80 이 연구에서는 지수걸의 연구에 부분적으로 의거하여 '유지'를 '재산과 사회활동 능력, 당국 신용과 사회 인망을 고루 갖춘 지역 사회의 유력자'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지수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문제연구』 3(1998); 지수걸, 「일제시기 충남 부여·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한국문화』 36(2005); 지수걸, 「일제하의 지방통치 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와현실』 63(2007) 등을 참조할 것.

81 《동아일보》, 1924년 4월 5일.

82 「사립학교규칙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제2263호(1920년 3월 1일); 「사립학교규칙 중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제2884호(1922년 3월 28일)."

83 《조선일보》, 1923년 11월 16일.

84 《조선총독부관보》 제135호(1913년 1월 15일).

설학술강습회를 설립하고 그 설립 인가를 매년 갱신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사립각종학교든 사설학술강습회든 간에 보통학교 졸업이라는 學歷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했기 때문에 學力만 키워 주면 되었다. 즉, 고생해서 사립각종학교를 설립할 필요는 없었고 당장은 사설학술강습회로 충분했다. 또 사설학술강습회라면 지역 유지의 부담도 덜했다.

〈표4〉의 사설학술강습회는 매년 인가 갱신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3~4년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그 기간에 보통학교 6학년까지의 내용을 속성 교수했다. 이것은 ‘보통과’라고 명명될 때가 많았다.<sup>85</sup> 또 ‘속성과’라는 명칭으로 “漢文의 素養이 있는 者”를 대상으로 하여 1년간에 보통학교 6학년까지의 내용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었다.<sup>86</sup> 이러한 사설학술강습회의 설립 목적은 사회 혼란의 진정이 아니라 연령 초과 아동의 구제였기 때문에 〈표5〉와 같이 중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특별한 지원활동도 실시되었다.<sup>87</sup> 봉산군 명농학원과 같이 무시험 입학·전학 특약을 얻으려고 고등보통학교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었다.<sup>88</sup>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로는 〈표6〉과 같다. 그 외에 흥미로운 사례로 공주고등보통학교(公州高等普通學校) 부정응시 사건을 들 수 있다. 1924년에

85 《동아일보》, 1924년 4월 5일; 《조선일보》, 1924년 4월 12일; 《동아일보》, 1925년 3월 4일; 《조선일보》, 1925년 3월 20일; 《조선일보》, 1925년 3월 20일; 《동아일보》, 1925년 3월 23일.

86 《동아일보》, 1924년 3월 26일; 《매일신보》, 1933년 4월 8일.

87 1924년도 상주군 내 7개 공립 보통학교 및 3개 공립 소학교의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였지만 보명학원은 7월 19일부터였다. 이것은 임간 교수를 실시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 1924년 7월 19일. 명농학원 산술강습회 강사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있는 車弼濟였다. 차필제에 관해서는 《조선일보》, 1961년 9월 29일자를 참조할 것.

88 《조선일보》, 1925년 3월 20일.

표5-연령 초과 아동 구제 사설학술강습회의 중등학교 입학시험 준비 특별활동

기관명	활동	출처
청주 대성학원	1922 가을 중등학교 진학 지원자를 선발하여 합숙 교수.	매330408
상주 보명학원	1924.8.1부터 3주일. 4학년 학생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林間教授.	조240807
봉산 명농학원	1925.7.21-8.25. 중등학교 진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술강습 회 개최. 외부 학생 참석 가능.	동250702 조250703
예천 대창학원	1929.7.26부터 3주일. 중등학교 진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간 교수.	조290811

주: 1) '매'는 《매일신보》, '조'는 《조선일보》, '동'은 《동아일보》를 의미함

2) '330408'는 1933년 4월 8일을 의미함

강경보통학교(江景普通學校) 5학년 학생 A는 공주고등보통학교 입학을 희망 했다.<sup>89</sup> 자신의 學力이 부족한 것을 자각한 A는 강경 양영학원 학생 B에게 대리 응시를 의뢰했지만 이 부정행위는 결국 발각되었다. 다음 1925년에 양영 학원 학생 C는 충남사범학교 입학시험 최종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공주고등보통학교장을 겸임하는 충남사범학교장은 '공주고등보 통학교장으로부터 강경 양영학원은 불량한 학원이기 때문에 그 학원의 학생에게는 절대 입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입학을 거절했다.<sup>90</sup> 이 사건으로 사설학술강습회 학생 중에는 남에게 대리 응시를 의뢰받을 정도로, 그리고 사범학교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學力이 높은 학생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9 “學業이 優秀하고 且 身體의 發育이 充分해야 高等普通學校의 課程을 修修에 足够을 當該學校長이 證明한” 보통학교 제5학년 수료자는 고등보통학교 입학을 위한 學力 검정시험을 응시 할 수 있었다. 「고등보통학교규정 제42조」, 《조선총독부관보》 제2854호(1922년 2월 20일).

90 《조선일보》, 1925년 4월 19일.

표6-연령 초과 아동 구제 사설학술강습회 학생의 진로

기관명	진로	출처
수원 화성학원	1922.3. 졸업자 7명. 모두 경성의 중등학교에 입학.	동220401
강경 양영학원	1923.3. 졸업자 51명. 각지 관공립 중등학교에 20여 명 입학.	매230331
능주 육영의숙	1923.3. 京城高普, 光州高普 입학자 약간 명.	조230402
청주 대성학원	1923.3. 고보 지원 8명, 합격 7명. 농업 지원 3명, 합격 3명. 사범(경성·충북·경북) 지원 8명, 합격 6명. 공보 제4학년 편입 합격자 있음. 순차 20명 합격. 면서기 2명 채용.	매330408
광주 청년학원	1923.3. 각 중등학교에 다수 입학. 1924.3. 光州中學 2명, 光州農業 6, 光州高普 8명, 群山水產 1명, 釜山商業 1명 등.	조240213 동240326
강화 강화학원	1924.3. 졸업자 48명. 고보, 사범, 海員養成所 등에 합격.	동240426

주: 1) '고보'는 고등보통학교, '농업'은 농업학교, '사범'은 사범학교, '공보'는 공립 보통학교, '중학'은 중학교, '수산'은 수산학교, '상업'은 상업학교를 의미함  
 2) '동'은 《동아일보》, '매'는 《매일신보》, '조'는 《조선일보》를 의미함  
 3) '220401'은 1922년 4월 1일을 의미함

연령 초과 아동 구제 사설학술강습회에는 보통과와 속성과 이외에 보통학교 6학년 졸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과가 설치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사설학술강습회는 교육 대상이 중등학교 입학 지원자였기 때문에 원래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과의 친화성이 강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상주군 보명학원을 설립한 사람은 1920년에 상주군에서 “中學期成運動”이 전개되었을 때에 거액을 기부한 4명의 “篤志家”였다.<sup>91</sup> 홍원군 육영학원은 1922년에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 “中等 程度의 教育機關”으로 설립되었다. 이 학원은 1924년도에 유지가 별도로 전개하고 있던 학령 초과 아동을 위한 강습회 사업을 흡수했다.<sup>92</sup> 김천군 금릉학원은 학령 초

91 《조선일보》, 1923년 12월 16일; 板垣竜太, 『朝鮮近代の歴史民族誌』(東京: 明石書店, 2008), 284쪽.

92 《동아일보》, 1924년 2월 29일; 《조선일보》, 1924년 4월 12일.

과 아동을 위한 과정과 함께 처음부터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과정도 설치했다. 미래에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할 때에 기초로 하기 위해서였다.<sup>93</sup> 고등과는 1년제일 경우는 고등보통학교 2학년 정도까지, 2년제 일 경우는 3학년 정도까지, 3년제일 경우는 5학년 정도까지 교수했다.<sup>94</sup>

## V. 맷음말

---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 과정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취급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서 차이가 있었다. 1910년대에는 졸업하지 않은 자는 아무 제한도 없이 졸업한 자와 동일한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경쟁했다. 한편 1920년대에는 졸업하지 않은 자는 學力 검정시험에 보고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學力”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선발시험을 볼 수 있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보통학교 졸업이라는 學歷의 가치가 더욱 더 확실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 시각을 바꿔 말한다면 보통학교를 경유하지 않고 學力으로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길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계속 열려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1920년대 초에 ‘취학난’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한 대응과 보통학교 입학자의 균질화를 위하여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10년대 보통학교 취학자의 주류였던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나이가 많은 아동이 배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지의 보통학교에 속수학교가 부설되었다. 도가 설치 방식을 결정한 이

---

93 《조선일보》, 1923년 1월 23일.

94 《조선일보》, 1924년 4월 12일; 《조선일보》, 1925년 3월 20일; 《동아일보》, 1925년 3월 23일.

임시 교육기관은 2년간에 보통학교 4학년까지의 교육 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하고 성적 우수자를 보통학교에 편입시켰다. 입학연령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의 수습이라는 목적은 1기 2년간으로 일단 달성되어 속수학교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속수학교는 모든 연령 초과 아동을 흡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선 각지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설학술강습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육기관은 군 단위 유지에 의해 군 중심지에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보통학교 6학년 정도까지를 교수하는 3~4년제 보통과와 1년제 속성과가 설치되고 입학시험을 위한 學力 양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속수학교의 취학 목적이 중등학교 입학을 위한 보통학교 學歷의 변칙적 취득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사설학술강습회의 취학 목적은 중등학교 입학에서 보통학교를 우회하기 위한 學力의 습득이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밝혔지만 연령 초과 아동 구제를 위한 사설학술강습회의 그 후의 전개를 검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설학술강습회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 학생 구성, 운영 주체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등 다양한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또 조선총독부의 정책도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관보》. 《조선교육》. 《조선교육시보》. 《조선총독부관보》.  
경상북도, 「公立學校長會諮詢事項答申書」(1920), 渡部學·阿部洋(편), 『日本殖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16』, 東京: 龍溪書舍, 1987.  
이병철, 『湖巖自傳』, 서울: 중앙일보사, 1986.  
조선총독부 학무국(편), 『大正十五年編纂 朝鮮諸學校一覽』, 1927.  
渡部學·阿部洋(편), 『日本殖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54』, 東京: 龍溪書舍, 1988.

### 2. 논자

- 김경미, 「학교운영 논리와 파시즘 교육체제」, 방기중(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혜안, 2005, 199~232쪽.  
김부자(지), 조경의·김우자(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교육』, 서울: 일조각, 2009.  
김형목, 『배움의 목마름을 풀어준 야학운동』, 서울: 서해문집, 2018.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취학욕구의 고조」, 『역사교육』 136, 2015, 133~162쪽.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 정책과 입학지원자의 급증·급감」, 『역사문제연구』 55, 2024, 141~182쪽.  
노영택, 「日帝下 私設學術講習會에 대한 統制策」, 『사학지』 10, 1976, 107~125쪽.  
노영택, 『日帝下 民衆教育運動史』, 서울: 텁구당, 1979.  
박진동, 「日帝強占下(1920년대) 普通學校 6年制 昇格運動의 展開와 歸結」, 『역사교육』 102, 2007, 97~126쪽.  
박철희, 「殖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백남곤, 「일제시기 김천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오성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2000.  
이문포, 「日帝下 高等普通學校 設立運動」,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혜정, 「일제하 '학술강습소'의 문화운동과 샘골학원」, 『역사와교육』 29, 2019, 39~85쪽.

지수걸, 「일제시기 충남 부여·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한국문화』 36, 2005, 194~247쪽.

지수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문제연구』 3, 1998, 14~75쪽.

지수걸, 「일제하의 지방통치 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와현실』 63, 2007, 345~379쪽.

한우희, 「日帝殖民統治下 朝鮮人의 教育熱에 관한 研究」, 『교육사학연구』 2·3, 1990, 121~135쪽.

古川宣子, 「1920年代 大邱 德山學校」,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5, 2007, 117~145쪽.

金富子, 『植民地期朝鮮の教育とジェンダー』, 東京: 世織書房, 2005.

渡部學, 「「私設學術講習會」の「露頭」」, 『韓』 3-10, 1974, 63~89쪽.

渡部學, 『朝鮮教育史』, 東京: 講談社, 1975.

板垣竜太, 『朝鮮近代の歴史民族誌』, 東京: 明石書店, 2008.

## 국문초록

1920년대 초에 '취학난'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입학연령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10년대 보통학교 취학자의 주류였던 부유한 가정의 나이가 많은 아동이 배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각지의 보통학교에 속수학교를 부설했다. 이것은 2년 만에 보통학교 4학년까지 배우는 분량의 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하고 성적 우수자를 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시킨 후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연령 초과 아동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 각지의 군 중심지에 군 단위 유지가 사설학술강습회를 설립했다. 여기서는 중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學力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3~4년간에 보통학교 6학년까지 배우는 분량의 내용이 교수되었다. 속수학교 취학 목적이 보통학교 學歷의 변칙적 취득이었다고 하면, 사설학술강습회 취학 목적은 보통학교를 우회하기 위한 學力의 습득이었다.

투고일 2025. 6. 8.

심사일 2025. 9. 12.

제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보통학교(common school), 속수학교(short-term school),

사설학술강습회(private academic institutes), 학력(學歷, educational background),

학력(學力, academic ability)

## Abstract

### Short-Term Schools Attached to Common Schools and Private Academic Institutes in the Early 1920s

**Nakabayashi, Hirokazu**

In the early 1920s,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osed an age restriction policy for admission to common schools. Consequently, older children from wealthy families were excluded, leading to significant disruptio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stablished short-term schools attached to common schools. These schools delivered the curriculum up to the 4th grade over the course of two years, transferred high-achieving students into the 5th grade of common school. However, as these measures still could not absorb all overage children, local elites established private academic institutes. These institutes aimed to cultivate academic ability in preparation for secondary school entrance examinations. If the objective of attending the attached short-term schools was the irregular acquisition of a common school educational background, then the objective of attending the private academic institutes was the acquisition of academic ability as a means of bypassing the common school system.